



에너지복지관련 조례도 없는 대전·충북, 기초지원하는 경기·전북·대구 지자체별 에너지복지 관련 조례 및 예산사업 상이한 양상 에너지복지정책 총괄 및 조정기능 기관 없어 지자체간 차이 불가피

작성:신희진 책임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1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지역별 에너지복지정책의 양상과 개선과제

1. 기후위기와 에너지복지정책수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현상이 심화되고,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이용소외계층의 생활여건 악화요인으로 작용함.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격이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저감정책으로 인한 이산화배출비용 내부화 역시 에너지가격을 끌어올려 에너지빈곤을 심화시킴.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접근성을 지원하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은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과정에서 요금 연체가구에 대한 대규모 단전조치가 시행되던 시기인 2005년 단전가구 여중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빈곤이라는 사회문제가 국가의 해결과제로 대두되면서 시작됨.

에너지복지정책 전담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이 설립되었으나 공공기관으로의 위상확립이 지연되면서 해당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지 못했고, 부처간, 사업간 수행주체와 기준이 연계되지 못하고 상이하게 분산되면서 에너지복지정책 수혜대상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결과로 이어짐.

한편, 지방분권이 확대되면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에너지복지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하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와, 중앙정부의 재원 없이 지방재원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복지정책사업의 현황을 살펴봄.

2. 지방자치단체 에너지복지 관련 조례 분석

1)광역지자체의 에너지복지 관련 조례 설치 현황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있는지확인함. 광역단체별로 조례 본문에 '에너지 복지'관련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1차 검색하고, 없는 경우 '에너지'를 보충적으로 확인함. 기후변화대응 등의 조례는 그 결과 검색된 조례로 앞선 작업에서 관련조례가 확인된 광역의 경우는 추가하지 않았음.

확인 결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에서 조례를 통해 에너지복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조문을 통해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에너지복지관련 내용이 포함된 조례가확인되지 않았음.

조례에 에너지복지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는 △현행 에너지법처럼 에너지의 수급과 사용,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일반의 내용을 규율하는 에너지조례 또는 에너지 기본조례라는 제명 아래에 에너지복지관련 규정이 포함하거나, △ 에너지복지조례를 따로 두고 있는 경우로 크게 구별되었음.

에너지법 또는 에너지기본법이라는 제명으로 에너지일반을 규율하는 조례에 에너지복지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등 **10**개였음.

대전광역시의 경우 '에너지조례'라는 제명의 조례가 있으나 에너지복지에 관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음.

한편, 에너지복지에 관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에너지복지조례'가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 4개였음.

전라남도의 경우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제명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었음.

대구광역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조문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음.

대전광역시의 경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라는 제명의 조례를, 충청북도의 경우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저탄소녹생성장 조례'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에너지복지에 관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음.

구분	조례제명	에너지복지 조문포함	미포함
에너지 일반	ᅵ베ᅥᅥᄉᄼ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강원도,전라남도,제주특 별자치도	충청북도
에너지	에너지 복지조례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	
복지	에너지 미공급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기후위기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정의로운 전환)	대전광역시
련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		충청북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나라살림연구소 정리

2) 에너지복지기금 설치.운영 관련 규정

에너지복지사업과 관련해 기금을 설치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있는지 확인함.

조례를 통해 에너지복지기금의 설치.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가 유일함.

그러나 조례를 통해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도 현재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된 부산광역시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에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에너지 관련 기금으로는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의 장기적 안정적 관리유지를 위한 증설·개량·대규모수선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이 유일함.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의 경우 에너지기금에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금의 사용 목적에 '에너지복지'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그밖에 도지사(시장)가 인정하는 에너지관련사업' 등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음.

3) 정책대상으로써 '에너지취약계층' 등에 관한 정의

에너지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인 에너지취약계층 등에 대해 해당 조례들을 통해 정의하고 있는 경우는 서울 등 7개 광역지자체로 각각 에너지취약계층(서울, 강원),

에너지이용취약계층(광주), 에너지빈곤층(부산, 세종, 충남, 제주) 등의 용어를 혼용해 사용하고 있음.

해당 개념을 정의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triangl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TPR)'라고 하여 경제적빈곤 또는 소득대비 에너지구입비용의 비중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정의를 통해 사업대상을 확인하는 방식(서울, 세종, 충남, 제주)과 \triangle 에너지복지의 사업대상 규정을 목표로 하는 대신,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하다거나 에너지이용에서 소외된다는 일반적인 정의를 사용하는 경우(부산, 광주, 강원)로 구별되었음.

항목	조례	내용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저소득 가구 중 연료비 부담으로(소득에 비해 에너지 구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가구로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
에너지빈곤층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
	충청남도 에너지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퍼센트 이상인 가구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에너지이용취약 계층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경제적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
에너지취약계층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저소득 가구 중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여 에너지이용 환경이 취약한 계층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나라살림연구소 정리

4) 에너지복지 관련 주기적 기본계획

5년단위의 기본계획수립여부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에너지' 일반을 규율하는 조례에에너지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의 경우는 에너지계획에 에너지복지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명시한 경우(전남,서울, 경기, 충남)와 그렇지 않은 경우(인천, 강원)로 구분됨.

제명이 '에너지복지조례' 인 경우 5년단위의 에너지복지 계획을 수립해 에너지계획 또는 기본계획과 연동하거나 포함하도록 하고, 복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항목화해 기술하고 있었음.

5) 에너지취약계층 현황 및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등

조례를 통해 에너지복지정책을 위한 에너지취약계층 현황과 에너지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곳은 부산, 광주, 강원, 전북, 경남 등 5개 광역 지자체였으며, 이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여타의 지역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인 것과 달리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는 점이 다름.

충청남도의 경우 실태조사에 관한 조문은 없었으나 에너지빈곤층지원 등 추진현황에 관한 백서발간을 규정하고 있음.

항목	조례명	내용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보편적 에너지 공급의 실현을 위한 에너지 복지
에너지 계획에 포함항목으로 기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그 밖에 에너지 사업 및 시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12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기타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에너지조례	에너지빈곤층 등 지원

		1. 에너지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미골급시역 수별 사원에 그	2. 복지 대상이나 지역 등 에너지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복지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 미공급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경상담도 메너지 목시 소례	2.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에너지복지 기본계획의 내용을	부산광역시 에너지 복지 조례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상세규정		2.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복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 빈곤층 및 빈곤지역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광주광역시 에너지 복지	2. 에너지 복지 정책의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조례	3. 에너지 복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나라살림연구소 정리

3.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복지사업

1)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복지사업

국비보조금 없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의 현황을 확인함.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세부사업 가운데 사업명에 '에너지복지'가 포함되거나 폭염 등 이상기후 또는 에너지와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이 연결된 경우를 검색해 정리함.

그 가운데 사업의 재원구성 가운데 국비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광역시도비는 포함되어있는 광역지자체의 보조금사업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국비없이 광역지자체의 보조금이 포함된 에너지복지사업은 경기도의 '폭염대비에너지복지지원사업', 전라북도의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대구광역시의 '독거노인폭염혹한기극복지원' 사업 등이 있었음.

자치 단체명	세부사업명	편성액	예산현 액	국비	시도비	시군 구비
경기성남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25	25	0	12	12
경기의정부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21	21	0	10	10
경기안양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41	41	0	20	20
경기부천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40	40	0	20	20
경기동두천시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	21	21	0	10	10

경기고양시	폭염대비 에너지 복지지원사업	21	21	0	10	10
경기구리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16	16	0	8	8
경기남양주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21	21	0	10	10
경기오산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16	16	0	8	8
경기시흥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42	42	0	21	21
경기군포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시)	28	28	0	14	14
경기하남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18	18	0	9	9
경기파주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46	46	0	23	23
경기이천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보조)	16	16	0	8	8
경기김포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36	36	0	18	18
경기연천군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비)	29	29	0	14	14
경기양평군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보조)	22	22	0	11	11
경기화성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48	48	0	24	24
경기양주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사업	41	41	0	20	20
경기포천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21	21	0	10	10
경기여주시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21	21	0	10	10
경기본청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자체/지원)	316	316	0	316	0
경남창원시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및 시설개선	40	40	0	12	28
전남여수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물품 지급 사업	6	20	0	6	14

TI HI TI T II						
전북전주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9	9	0	3	5
전북익산시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11	11	0	5	7
전북남원시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11	11	0	5	7
전북김제시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보조)	7	7	0	3	4
전북완주군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1	11	0	5	7
전북무주군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9	9	0	3	5
전북장수군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9	9	0	3	5
전북임실군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7	7	0	3	4
전북순창군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8	8	0	3	5
전북고창군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9	9	0	3	5
전북부안군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9	9	0	3	5
전북본청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51	51	0	51	0
대구중구	독거노인폭염혹한기극복지원	31	31	0	31	0
대구중구	폭염대비취약노인냉방용품등지 원	58	58	0	58	0
대구동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45	45	0	45	0
대구동구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용품 등 지원	111	111	0	111	0
대구남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지원	192	192	0	192	0
대구북구	독거노인폭염혹한기극복지원	41	41	0	41	0
대구북구	폭염 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사업	11	11	0	11	0
대구북구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기 등 지원	77	77	0	77	0

대구수성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42	42	0	42	0
대구수성구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 및 관리	8	8	0	8	0
대구달서구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	304	304	0	304	0
대구달성군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극복지원	32	32	0	32	0
대구달성군	폭염기 취약노인 냉방용품 등 지원	62	62	0	62	0
대구본청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지원(구군)	320	320	0	320	0
대구본청	폭염 건강취약계층 건강물품 지원	80	80	0	80	0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

경기도의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

경기도의 '폭염대비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은 도비와 시군비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거동 불편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정에 냉방기기(에어컨)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시군비를 일대일로 매칭해 경기도내 22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함.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가 사업의 대상이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관내 60가구가 사업량으로 책정됨.

전라북도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전라북도의 취약계층 홈닥터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가구의 난방시설에 대한 무상 점검·수리를 통해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와 시군구비를 40:60의 비율로 매칭해 도내 12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임.

무주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후 주거환경 거주자, 사회적 소외계층,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간, 오지, 농촌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 노후부품 교체, 청관제 투입 등을 **50**가구에 대해 진행함

대구광역시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 사업

대구광역시의 독거노인 폭염·혹한기 극복 지원사업은 폭염, 혹한에 취약한 독거노인에게 폭염, 혹한기 극복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5개 기초자치단체세어 도비 100% 사업으로 운영됨.

대구광역시 중구의 경우 관내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삼덕노인복지센터, 어르신마을노인복지센터 등 관내 3개 노인복지시설의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하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라 지원함.

이밖에 경남 창원시와 전남여수시에서 각각 도비보조금과 자체예산을 매칭한 에너지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은 각각 3:7이었음.

2)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에너지복지사업

한편 국비 또는 광역시도의 보조금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만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확인됨.

서울특별시의 경우 송파구, 성북구, 도봉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후변화기금'에서 에너지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송파구의 경우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을 세입조치해 지역내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함. 송파구는 2033년까지 에너지빈곤층 지원금으로 34.2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이며, 2022년에는 2억9천만원을 편성해 온실가스 감축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장려, 국내외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

한편, 강원도 인제군, 전남 신안군 등은 에너지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자체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자치단체명	세부사업명	편성액	예산현액	국비	· ·	시군구 비
경기광명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1	1	0	0	0
전남신안군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사업	100	100	0	0	100
서울광진구	폭염 및 한파 대비 고령자 보호	10	10	0	0	10
서울성북구	에너지복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56	56	0	0	56
서울송파구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	290	290	0	0	290
서울도봉구	에너지복지사업	15	15	0	0	15
인천계양구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0	0	0	0	0
강원인제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자체]	200	200	0	0	200
강원양구군	폭염 취약가구 냉풍기 및 식수 지원	11	11	0	0	11
대전대덕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40	40	0	0	40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

4. 지방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의 차이와 문제점

앞서 확인했듯, 상당수의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내용과 단체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조례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대상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내용,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더구나 광역간에 상당한 차이가 노정되는 것이 사실임.

확인했듯, 국비사업 뿐 아니라 지역에서 광역보조금과의 매칭편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에너지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양상이 확인됨.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에너지복지정책에서 지자체 역할의 제고와 기능적 분업의 필요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에너지법상 에너지복지는 '정부'의 역할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19)에서 에너지분야 사업예산을 포함한 중장기 지역에너지거버넌스의 과제에 에너지복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에너지법에 따라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매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지역에너지 계획에서도 에너지복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사각지대 없는 에너지복지수요의 파악이나 효과적인 전달체계 및 재원 확보 측면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음.

다만, 각 지역의 조례가 규율하는 에너지복지정책의 수준이나 목표가 상이하고 재정과 예산의 투입수준도 달라 자칫 지역간 에너지복지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위험이 있음.

에너지복지는 지자체의 재정여력 및 정책추진의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반드시확보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임. 에너지복지 측면에서 지자체간 수평적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에너지 거버넌스를 연계하고 에너지 빈곤 실태조사에 기반한에너지복지정책의 목표와 기준, 실효성있는 해결방안과 실행체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의 역할이 요구됨.